

##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고찰

조홍제\* · 신동춘\*\*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우주손해 관련 국제조약
- III. 우주손해와 관련문제
- IV. 결 론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원, 항공우주법 박사  
\*\* 티웨이항공 부회장, 행정학 박사

## I. 문제제기

1957년 구소련의 **Sputnik 1호** 발사 이후 미·소 간의 우주개발의 경쟁적 참여는 결국 인간의 삶을 우주공간으로 확장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까지 끼어들어 마치 우주선 개발의 경쟁이 삼국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오늘날 우주에서는 과학의 발달과 병행하여 상업적·군사적 이용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위성을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만큼 우주개발과 발사는 고도의 정밀성과 첨단과학이 융합된 것으로서 과학의 총아이며 국가의 상징성이 크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우주개발과 탐사 및 이용, 선·후진국의 경쟁적 참여가 확대될수록 우주공간에서 많은 이해가 충돌될 것이며 또한 인적·물적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우주 강국들은 수많은 인공위성, 우주선(space shuttle), 우주정거장(space station) 등을 우주공간에 발사하고 있으며, 이미 발사된 인공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저궤도(LEO)와 정지궤도(GEO)를 돌고 있지만 현재 인공위성의 수명이 다되어 그 기능이 상실된 인공위성과 우주파편들은 그대로 우주공간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우주파편은 지구상에 예고 없이 낙하되어 인명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많은 민간 및 상업용 위성체가 우주로 발사되어 지구주변 궤도에 수많은 위성이 배치됨으로써 충돌 등 사고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더욱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우주공간의 개발과 이용 탐사는 모든 국가에게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으며<sup>1)</sup>, 평화적 이용원칙<sup>2)</sup>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우주의 자유는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그리고 마이크로 웨이브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위성을 포함하는 각종 우주물체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피해국가에 유효하고 정당한 원상회복,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배상을 하는 법적 책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와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문제에 대한

1) 우주조약(1967) 제1조, 제3조.

2) 우주조약 제4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기본적으로 우주활동으로 인한 책임의 구조는 4개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위험한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과 통상적인 위법행위 책임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계약책임과 제조물 책임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주책임과 관련된 국제법 중에서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과 1972년 제정된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주손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 II. 우주손해 관련 국제조약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통일적인 규범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우주조약<sup>3)</sup>과 우주책임협약을 채택하였다. 1967년의 우주조약은 우주에 관한 *Magna Carta*로서 우주관련문제에 대해서 해석의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72년에 제정된 우주책임협약은 우주손해와 배상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법이다. 이와 아울러 각국은 국내적으로 우주손해와 관련한 국내법을 제정,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아래에서 우주손해 배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주책임의 핵심이 되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UN 총회는 1963년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다루는 원칙을 만장일치로 선언하였으며, 그 결과 우주법의 *Magna Carta*라고 불려지는 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가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이하 ‘우주조약’ 이라 한다)’을 탄생시켰다. 이 조약의 기본개념은 모든 국가들은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에서의 활동은 그 국가의 경제적, 과학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주는 어떤 국가의 주권에도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 우주조약

우주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우주조약에서는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활동을 수행할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국에 의한 인증과 계속적인 감독을 요한다.”<sup>4)</sup> 또한, 제6조는 국제기구와 그리고 그 같은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당국에 대해 요구되는 조약 준수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우주조약은 모든 우주활동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고, 우주법의 근본적 원칙들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조약의 위반은 일반적으로 우주의 법적 체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국제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은 우주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6조하에서 일반적으로 우주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개념은 국제법하에서 국제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제6조는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으로부터 다소 벗어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6조는 국가가 그들의 공적 행위에 관해 책임을 지듯이 우주활동과 관련한 사적인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가는 적절한 관리(*due care*)를 했다는 이유로 사적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국제적 책임에 있어서 사적 주체의 우주활동도 국가의 활동과 동등하게 취급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해당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 등의 우주활동을 허가하고 계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입법을 하도록 그 유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된다. 어떤 종류의 의무 위반이든 국가는 그 행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 제6조의 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활동을 행하는 실제의 주체가 정부기관이든 사기업 기타의 비정부적 주체

4) 원문은 다음과 같다.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whether such activities are carried o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non-governmental entities.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the appropriate State Party to the Treaty”.

이든 그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책임의 집중). 따라서 사기업 기타 비정부적 주체가 우주활동을 하려면 그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허가 및 계속적 감독을 요한다. 둘째, 국가는 사기업이 우주조약의 내용에 따라 활동하도록 하여 조약의무이행을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책임을 지며 그러한 사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조약을 준수치 않는데 대한 책임이 국가에 직접 귀속된다. 셋째, 국가(또는 그 감독을 받는 사기업)가 발사한 물체 또는 그 구성부분에 의해 타국 또는 그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우주조약 제7조는 직접적으로 피해에 대한 책임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대기권 혹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sup>5)</sup> 이 조항은 후술하는 책임협약에 의해 구체화되었는바 동 협약에서는 우주법상 발사국(launching States)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 유일한 실체는 국가일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책임이 실행되고, 어떤 방식으로 우주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잠재적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조항은 결여되어 있다. 말하자면 책임과 관련된 법의 실체법적 영역에 관해 다루고는 있으나, 이 두 조항들 어느 것도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법적 내용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손해의 발생장소는 지상, 대기권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이며 지구상에 있어서의 손해는 사람 및 재산에 관한 손해, 즉 소위 지상 제3자 손해이며 대기권에 있어서의 손해는 주로 통상의 항공기에 대한 손해이며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손해는 다른 조약당사국의 우주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손해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이들 장소에 있어서 우주물체의 상승, 비행, 강하, 착륙 등의 과정상 야기된 손해가 제7조의 주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조의 책임규정은 제6조의 국가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nternationally liable for damage to another State, or its natural and juridical persons by such object or its component parts on the Earth, in air space or in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며 발사물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2. 우주책임협약<sup>6)</sup>

우주활동시 발생하는 책임문제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는 책임협약은 절대책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과실책임도 규정하는 이원적인 책임구조를 가지고 있다.

동 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우주물체가 지구표면 또는 항행중인 항공기에 입힌 손해를 절대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가 지구상에서 발생하였거나 비행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는 발사국이 절대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절대책임은 국제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단순히 위험한 활동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법리는 최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상업의 확대로 인간과 환경에 엄청난 손해를 발생시킬 ‘초위험적 활동’ (ultra hazardous activities)이 증가하게 되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위험한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제도의 정립을 서두르게 됨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책임논의는 오늘날 모든 국가가 우주활동을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법에도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책임협약에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하였다. 동 협약상 이 절대책임의 적용범위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지표” (surface of the earth)란 육지, 바다, 지하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란 공중(airspace)에 배치된 모든 인공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주활동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주활동을 하는 국가는 뒤따르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우주물체 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한 절대책임을 부가할 때, 그 활동에 본질적으로 따른 위험 때문에 특정 조건하에서 그런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발사국가의 절대책임을 규정한 타당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야기시키는 국가는 임의의 피해국 보다는 우주활동에 관련되는 발사로 인한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한편, 제3조에서는 “지구 표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에 의해

6) 공식명칭은 “우주물체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관한 국제책임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으로서 1972년 채택되었다.

7) 최완식, 서보현, 우주법연구,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1992, p.15.

서 어떤 발사국의 우주물체나 그 우주물체에 있는 사람. 재산에 손해가 가해졌을 경우에 가해국은 손해가 그 발사국의 과실이나 발사국이 책임지는 사람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국제법에 근거한 위법행위책임이다. 즉 손해가 지상이 아닌 곳에서 다른 우주물체나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에 발생한 경우는 피해를 준 우주물체의 발사국이나 그 관할하의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2조의 절대책임은 영역은 지상, 수상, 대기권에 한정되며, 우주의 다른 부분은 과실책임영역이 지배한다.<sup>8)</sup> 책임협약 제3조는 과실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구 표면, 대기권 이외의 장소에서 우주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거나 이것은 지표 이외의 곳, 다시 말해 우주에서 우주물체끼리 충돌하거나 전자기적 간섭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주물체 발사국들 상호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다른 소유자에 속하지만 동일 발사 국가일 경우에는 책임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발사국의 국내법에 의해 책임 및 배상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발사국을 달리하는 우주물체들간의 충돌의 경우, 발사국 상호간에 책임관계는 오로지 과실책임주의에 따른다. 그러나 협약에는 과실에 대한 규정과 설명이 없다. 전통적으로 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우주상 활동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계약책임과 제조물책임을 들 수 있다. 계약책임은 계약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이다. 계약책임은 근본적으로 국내법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당사자가 명백하고 공식화되어 있으며 손해를 야기한 사고 발생시 이미 당사자가 존재한다. 이같은 계약책임은 국제적 측면에서는 종종 국가간 조약문제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계약적 손해발생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국내법에서 불법행위책임과 유사하게 국제법에서는 제3자 책임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이같은 제3자 책임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공적인 법적문서가 가장 관련성이 있으며 특히 국제항공수송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관한 바르샤바 체제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국내법적 차원에서는 명확히 성문화된 법 및 규정, 보통법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재판권과 관습법이 더욱 요구된다. 아울러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부가시킬 수 있는

8) Bruce A Hurwitz, "State Liability for Outer Space Activit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32.

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제조물 책임은 상품 구매시 결함에 의해 재산상 손해나 신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자, 이용자, 참관자에게 제조자나 판매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제정한 제조물 책임을 제정하였던 바, 동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상 손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의 제조자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sup>9)</sup>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계약 특수조건과 방산특수조건에도 ‘제조물책임’을 규정하여 2004년 1월 20일자로 시행하고 있다.<sup>10)</sup> 우주발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위성체 공급자(Payload Provider)와 발사용역공급자(Launch Service Provider)간에는 발사 실패시 상호책임을 면제(Cross-Waiver)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도 있어 제조물 책임을 계약으로 회피하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우주손해배상법에서는 제조물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

### Ⅲ. 우주손해와 관련문제

#### 1. 손해의 발생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책임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절대책임의 경우에도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원칙은 우주활동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협약상 “손해”란 “사망, 신체적 상해나 기타 건강의 침해 또는 국가, 개인(자연인, 법인, 또는 정부간)의 재산의 상실이나 침해(loss of life, personal injury or other impairment of healthy : or loss of or damage to property of States or of persons, natural or juridical, or property of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를 의미한다.(책임협약 제1조 a호) 손해의 개념 속에

9) "State Liability for Outer Space Activit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10) 제19조(제조물 책임) :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손해의 의미를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손해산정의 범위가 달라진다.

중요한 논점은 직접손해 이외에 간접손해도 포함되는가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이 개념에 포함되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발생한 비용의 포함여부와 신체적 손해 이외에 정신적·사회적 복지의 침해도 포함되는가?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sup>11)</sup> 협약은 손해의 의미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 2. 인적 손해/정신적 손해

인적 손해에 대해서 보면,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상해”(injury) 또는 “기타 건강침해”(other impairment of health)의 해석에 대해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손해의 개념 속에 신체적 상해와 질병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컨대 우주물체의 파편이 사람을 강타, 그로 인해 팔이 절단되고 나아가 파상풍에 감염되어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이는 기타 건강의 침해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비육체적 손해나 질병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따르면 건강을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 상태를 말하며,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의 부존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12)</sup> 그러므로 건강 상실은 단순히 육체적 허약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불안까지 의미한다. 심리적 불안도 고통과 질병이다. 그러한 결론은 1974년 핵실험의 사례에서 전례를 찾을 수 있다. 태평양상에서 프랑스의 핵실험으로부터 방출된 방사능 물질에 관해 오스트레일리아가 프랑스에 대해 주장한 청구들은 오염된 지역의 사람들에게 야기된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심장발작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파편이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접촉함이 없이 우주물체의 파편이 그 사람 눈앞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결과로써 심장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sup>13)</sup> 그러한 사례에 대한 보상의 경우를 루시타니아 사례(Lusitania case)에서 찾을 수 있다. 보상이 주어진 희생자의 친척이 입은 쇼크(충

11) 이규찬, “우주물체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83호, 1998, p.176.

12) Bruce A Hurwitz, op. cit., p.13.

13) Christol, C. Q., Modern International Law, New York: Pergamon, 1982, pp.195-196.

격)에 대한 간접적 손해는 그러한 손해방지 비용, 직접적 희생자 및 그들의 미출생 자녀 사이에 장래 발생할 손해를 치료하는 비용이 될 수 있다.<sup>14)</sup> 손해의 의미에 간접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선례에 비추어 보아도 공정할 뿐만 아니라 책임협약의 서문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만약 보상이 모든 비건강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책임협약 본래의 희생을 복구한다는 근본 목적을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임협약 협상당시 정신적 손해도 협약의 범위내에서 배상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제항공법에서도 논란이 되듯이 그 의미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국제법에서 국가와 자연인 모두에게 끼친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물질적 손해와 대비되는 손해로 인식되어졌다. 정신적 손해는 국가에 대한 침해는 국가에 대한 존엄성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고, 물질적 손해는 자연인이나 재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정신적 손해의 사례는 조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조약 위반은 물질적 손해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는 조약을 위반한 국가는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될 것이다.<sup>15)</sup>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어떠한 종류의 침해가 정신적 피해를 구성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에서 책임협약을 검토할 때, 국무성 법률자문관은 협약하에서 고통, 모욕(굴욕)과 같은 피해, 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협약에서는 배상은 국제법과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청구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게 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례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의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미국에서는 배우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다.<sup>16)</sup> 이 문제에 대해서 헝가리 대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주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14) 이러한 사례는 체르노빌 사건에서 볼 수 있다. 폭발 당시 사건현장에 인접해 있던 임산부들 중에 부진아 출산율이 50%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R. P., Gale & T. Hauser, *Final Warning: The Legacy of Chernobyl*, New York, 1988, p.127.

15)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843(eds. Friedmann, Lissitzyn, & Pugh, 1969), 재인용 p.254.

16) 배상가능한 피해의 종류에 있어서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사례, Reis, U.S. Discuss "Applicable Law" for Outer Space Claims, 62 DEP'T STATE BULL., 18(1970)

COPUOS에 제안형태로 제출하였다.<sup>17)</sup> Foster에 따르면, 이 문제는 COPUOS 법률소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책임협약에서도 특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이나 삶을 향유할 능력의 상실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증언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국제법이나 미국의 국내법 관행에서도 잘 알려진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청구의 범위 속에 그러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NASA의 사무총장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 또한, 우주물체에 의한 사망자의 생존자가 경험한 정신적 고통과 우주물체에 의해 부상당한 자가 경험한 고통 모두에 대한 배상이 책임협약하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의견도 있었다. <sup>19)</sup>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내법에서도 우리 민법 제751조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도 정신적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항공법에서는 바르샤바 조약 제17조의 ‘bodily injury’라는 용어와 이를 그대로 입법화한 몬트리올조약의 ‘bodily injury’라는 문언에 따라서 정신적 손해 배상은 제외된다는 주장과 판례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 보호라는 몬트리올 협약 서문의 정신과 항공운송인 보호 보다는 소비자, 즉 승객의 완전하고 충분한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책임협약상 발생하는 손해는 육체적, 물질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도 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법원에서 재산의 훼손이나 손실에 대해 배상이 허용된 것 중에서 수익의 손실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었다. 인적 상해에 근거한 청구시, 배상액에는 의료비, 수익의 상실,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도 포함되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가 그러한 피해에 대한 기여가 있을 때 배상액을 감경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선례는 모욕, 배우자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충격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어떠한 선례는 1967년의 우주조약 제7조에 대한 상원의 해석으로 후퇴하

17) COMM. on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REPORT, pp.23-24.

18) Fost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0 CANADIAN Y.B. International Law. 137(1972), p.173.

19) Alexander, *Measuring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6 Journal of Space Law. 151(1978), p.155.

고 있다. 상원은 우주조약 제7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오직 육체적 피해만을 다루었고 어떤 일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전자파 방해를 일으키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육체적 피해의 개념만을 적용하는 매우 제한된 것이었으나, 1972년 책임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조금 더 확대된 국제적 불법행위의 골격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법률협회의 전문가적인 견해에 의하면, 불법행위 분야에 있어서 배상청구가 가능한 손해는 일반적 손해와 특별한 손해 양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반적 손해는 재산의 손실이나 이용권의 상실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포함한다. 인적상해의 있어서 특별 손해는 수익능력 상실과 치료비와 관련비용을 포함한다. 아울러 비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한 바, 여기에는 공포, 근심, 친구의 상실, 자유의 상실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사고이며 비교의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국내법의 관할권은 특별한 연장선상에서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구소련의 국내 불법행위법은 미국과 상이하다. 구소련의 배상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개인의 인적 손실 보다는 주로 제도적 비용(병원비, 수업료, 국가연금) 등과 관련되어 문제시되고 있다. 책임협약의 협상기간 동안 구소련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손해를 다루는 발사지의 법과 손해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법을 제안하였다. 구소련의 제안은 미국의 개념과 관행과 비교했을 때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재판실무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고통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나 상해 치료 또는 회복과정에서 겪는 육체적 통증(pain) 뿐만 아니라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나 상해로 인해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sup>20)</sup>으로서의 놀람(fright), 충격(shock), 두려움(fear), 공포(terror), 걱정(anxiety), 불행(unhappiness), 창피함(humiliation), 우울증(depression), 불편함(inconvenience) 등의 정신적 고통을 총칭한다<sup>21)</sup>. 불법행위로 인한 성격의 변화도 포함한다<sup>22)</sup>. 고통은 불법행위 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실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까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sup>23)</sup>고 하고 있다.

20) Dimare v. Cresci, 58 Cal. 2d 292, 373 p. 2d 860 (1962).

21) Capelouto v. Kaiser Foundation Hospitals, 7 Cal. 3d 889, 500 p. 2d 880(1972).

22) Coco v. Richland General Contractors, Inc., 411 so.2d 1260 (3d cir. 1982).

23) Merchant's Fast Motor Lines, Inc. v. Lane, 259 F.2d 336 (5th cir. 1958); Yerrick v. East Ohio Gas Co., 119 Ohio App.220 (1964).

### 3. 물적 손해

다음으로는 물적 손해의 개념이다. 직접손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예컨대 우주 물체가 가옥에 떨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직접 손해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손해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고는 일반적으로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인적 손해로 인해 인적 손해의 직접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받은 경제적 상실비용인 간접손해가 협약상의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는가? 예컨대 피용자가 우주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결근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손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손해 이외에도 간접손해의 예로는 재산 그 자체의 가치적 손해 이외에 그 재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상실이나 사업상의 장애로 인한 상실이익,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의료비, 간호비 등이 재산상의 간접손해에 해당한다.<sup>24)</sup>

재산상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취하는 입장이 다르다. 그러나 국제협약이란 법체계가 서로 다른 국가들이 합의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협약은 문명제국에 의해서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수준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명화된 법체계간의 충돌을 다루는 것이다. 국내법 체계가 다름을 이유로 재산상의 간접손해에 대해 A국의 국민은 배상을 받고 B국의 국민이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배상결정에 있어 정의와 공평을 모토로 하는 협약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상의 간접손해도 손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원격조종위성이 광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태양열 관련 정거장, 우주실험, 기상통제 기후변화기술의 오용으로 파멸이 초래될 경우 손해에 포함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도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 4. 환경오염

다음으로는 우주와 지구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개념이다. 환경에 대한 손해는

24) Ibid., p.15.

25) Ibid., pp.18-20.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우주상을 주회하는 우주과편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유해한 오염과 방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핵과 방사능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오존층에 대한 손해, 우주정거장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solar 위성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우주과편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은 커다란 환경오염의 한 부분이지만, 그 중 주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은 확실하다. 우주상에 과편의 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확실한 요인이다. 우주과편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지상에 낙하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우주상에서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원격통신과 탐사를 방해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인간과 발사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활동초기에는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조종사의 귀환과 지구로 따라오는 병원균 등에 대한 공포로 귀환하는 우주 물체를 정화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두려움은 의식되지 않고 관행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 오염의 가능성은 상존하며 손해발생 가능성도 확실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대기권에 존재하는 로켓에 의해 오존층에 야기되는 손해문제이다. 핵연료에 의해 추진되는 인공위성의 고장에 의해 야기되는 핵오염 문제는 국가에 대항하여 국제적이고 환경적 이해가 위험에 빠지고 부정적 영향을 받을 때 누가 지구와 우주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 5. 위성자료(사진 및 영상) 전송문제

그리고 전기혼선과 방해로 우주선에서 제공되어지는 위성사진과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수억 대의 경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항해 중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NASA에 의해 수집되기 전에 전자자료가 어떻게 방해받거나 바뀌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그러한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위성과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다. 또한 위성의 임무 수행시 위성의 전자파 방출, 어떤 예상치 못한 현상에 의해 야기된 비고의적 손해뿐만 아니라 고의적 손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6. 손해발생의 장소

우주손해에 대한 책임은 크게 절대책임과 위법책임으로 나누어지는 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발생장소, 즉 사고발생의 장소가 지구표면인가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인가에 따라서 책임의 요건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손해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손해발생장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우주와 영공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문적인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논의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주와 영공의 구분에 관한 논의는 공간설에 의하며, 이에 따라 우주는 지표면에서 약 100Km 이상 상공이라는 설이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 100km 이하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7. 소 결

지금까지, 인적손해의 경우에 건강에 직접적 결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간접적 결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건강침해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협약은 우주활동의 희생에 의해 지게 되는 사망의 경우에 부가해서 육체적, 심리적 모든 상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손해는 국가 또는 개인 재산의 손실 및 피해 자연인, 법인 국제 정부기구의 재산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겠다. 책임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의 개념은 인적,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직접, 간접적 손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주의 평화적인 탐사나 이용은 인류에게 유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어진다. 인간의 행위는 어느 정도 초위험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도의 주의만으로 그 위험이 제거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특히, 우주사고는 핵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야기되는 어느 정도의 손해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책임협약의 협상기간 동안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주물체의 작동불능이나 충돌로 인한 직접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IV. 결 론

앞에서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책임형태와 손해의 개념과 관련문제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주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 발생시 명확한 책임 부과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합의로 제정된 책임협약의 정신 아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제법 틀 내에서 올바른 법해석과 적용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언에서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처럼 이익과 손해 그리고 배상간의 관계를 치밀하고 정확하게 분석, 적용함으로써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책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은 우주조약과 우주책임조약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이 있다. 이러한 법이 우주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주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주활동 분쟁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해양법은 수 십년간의 노력과 합의를 통해 바다의 정의를 이루어나가고 있으며, 해양법 재판소를 설치하여 해양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점증하는 우주분쟁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쟁해결기구(국제 우주법 재판소를 설립 포함)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26)둘째, 우주활동에 관한 문제는 유엔의 우주공간의

평화적이용위원회 틀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도 협력적 기구를 설립하여 발사 및 책임문제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역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27)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였으며, 우주센터에서 우리 손으로 2012년 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어 바야흐로 우주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제 성공적인 우주개발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지지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6) 우주분쟁해결기구와 관련된 자료는 Gerardine Meishen Goh,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LEIDEN·BOSTON), 2007, 참조.

27) 이에 대해 항공대학교 김두환 교수는 가칭 아시아 우주개발기구(Asian Space Development Agency ; ASDA)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이상면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우주협력을 모색하면서 다자간 협력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 참고문헌

- 최완식, 서보현, 우주법연구, 한국항공대학교출판부, 1992.
- 이상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관한 모색, *항공우주법학회*, 2007.
- 함철훈,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논점, *법학논문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Vol 31.
-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2권 2호, 2007.
- 이규찬. “우주물체로부터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 83호, 1998.
- Gerardine Meishen Goh,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Space Law*, MARTINUS NIJHOFF PUBLISHERS(LEIDEN·BOSTON), 2007.
- Bruce A Hurwitz, *State Liability for Outer Space Activitie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 Christol, C. Q., *Modern International Law*, New York: Pergamon, 1982.
- R. P., Gale & T. Hauser, *Final Warning: The Legacy of Chernobyl*, New York, 1988.
-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843(eds. Friedmann, Lissitzyn, & Pugh, 1969).
- Reis, U.S. Discuss “Applicable Law for Outer Space Claims”, 62 DEP’T STATE BULL, 18(1970).
- COMM. on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REPORT.
- Fost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10 CANADIAN Y.B. International Law. 137(1972).
- Alexander, “Measuring Damages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6 Journal of Space Law. 151(1978).
- Dimare v. Cresci, 58 Cal. 2d 292, 373 p. 2d 860 (1962).
- Capelouto v. Kaiser Foundation Hospitals, 7 Cal. 3d 889, 500 p. 2d 880(1972).
- Coco v. Richland General Contractors, Inc., 411 so.2d 1260 (3d cir. 1982).
- Merchant’s Fast Motor Lines, Inc. v. Lane, 259 F.2d 336 (5th cir. 1958)
- Yerrick v. East Ohio Gas Co.,119 Ohio App.220 (1964).

## 초 록

오늘날 우주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선진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우주활동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와 이익을 제공되는 반면, 각종 우주물체의 충돌과 폐기물 증가 등으로 인해 인류의 활동과 우주환경 보존면에서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배상을 해주기 위해 현재의 국제법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우주조약과 우주책임협약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의 핵심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 손해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손해의 개념은 육체적 침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침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통을 수반하는 정신적 침해도 당연히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협약상 인적 손해로는 사망은 물론 우주활동의 결과로 희생자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직접손해이던 간접손해이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근거에 의해 실제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그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보상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환경오염의 배상 가능성, 위성자료 전송과 관련된 문제, 손해발생의 장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우주법재판소와 지역적 협력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주제어** : 우주활동, 우주사고, 우주손해, 우주조약, 공정하고 완전한 배상

## Abstract

### A Study on Damage caused by Space Activity

Cho, Hong-Je\* · Shin, Dong-Chun\*\*

Nowadays,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in which provide many services and profits due to rapid progress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whereas there is rising possibility of damage by collision of space object and increase of space debris.

I will propose the concept and range of damage in the basis of review of space treaty and space liability convention as form of international order to fair and complete compensate to victim of accident and hazardous space activity.

And, I will try to discuss possibility of compensation on personal damage and mental damage, scope of material damag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about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ssue of satellite data sending, place of damage, and so on. Also, I would like to propose establishment of space tribunal and regional cooperative agency.

**Key Words** : Space Activity, Space Accident, Space Damage, Space Treaty, Mental Damage, Equity and complete Compensation.

---

\* Senior Research Fellow,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h.D.

\*\* Vice Chairman of Tway Air, Ph.D.